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여대상, 결정절차,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명예시민증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 확대(안 제2조)

(현행) 외국인·해외교포

(개정)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

나. 수여대상 구체화(안 제2조)

다. 수여대상자 결정절차 변경(안 제3조)

(현행) 인사위원회의 의결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후, 구미시의회 동의

라. 수여자 예우 규정 신설(안 제4조)

마. 「권리와 의무부담」 규정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에게 구미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한다.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미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구미시 주관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소관부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주 영
	담 당	김 준 섭
	담 당 자	전 기 훈 (480-6753)